

「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 외 12인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책무에 따라 구미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4조)
-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, 경비 지원, 실태조사(안 제6조~제8조)
- 수소경제위원회 설치, 위탁, 교육·홍보(안 제9조~제11조)
-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,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기준, 포상(안 제12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36조
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
 - 「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」 제7조, 제9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¹⁾에 따라 수소산업의 육성과 수소용품의 제조사업 허가기준 수립을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에서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으로, 수소산업 육성 정책 및 전망 분석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“「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규정함으로써 수소·재생에너지 등 전반적 에너지산업이 포함될 수 있는 종합·복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

1) 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, 청정수소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수소사업자”라 한다)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·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·저장·운송·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9조에서는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, 수소 산업 정책의 조정·협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전문적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3조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으로,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2항 제2호2)에 따라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, 해당 기준의 규정으로 수소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2) 제36조(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)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(危害)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2.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